

## [ 목 차 ]

- 가입자 유의사항 ..... 3
- 주요내용 요약서 ..... 5
- 보험용어 해설 ..... 7
  
- 무배당 행복 knowhow 꼭 필요한 연금보험 약관 ..... 9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관 ..... 51
-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 63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71
- <별지> 약관 내 인용 조문 ..... 77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재해·상해

- 질병이나 체질적인 요인이 있는 자로써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해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본문의 '실제사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사고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고
-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 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행복knowhow 꼭 필요한 연금보험  
약관



## 무배당 행복 knowhow 꼭 필요한 연금보험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15
제 1 조 【목적】.....	15
제 2 조 【용어의 정의】.....	15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	16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6
제 4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6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8
제 6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8
제 7 조 【장기유지보너스에 관한 사항】.....	18
제 8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19
제 9 조 【보험금의 청구】.....	19
제 10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19
제 11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20
제 12 조 【주소변경통지】.....	20
제 13 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20
제 14 조 【대표자의 지정】.....	20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20
제 15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20
제 16 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20
제 17 조 【사기에 의한 계약】.....	21
제 4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1
제 18 조 【보험계약의 성립】.....	21
제 19 조 【청약의 철회】.....	22
제 20 조 【연금지급형태】.....	22
제 21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22

제 22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23
제 23 조 [계약의 무효]	23
제 24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24
제 25 조 [조기연금개시 옵션에 관한 사항]	24
제 26 조 [보험나이 등]	25
제 27 조 [계약의 소멸]	25
<b>제 5 관 보험료의 납입</b>	<b>25</b>
제 28 조 [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25
제 29 조 [제 2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26
제 30 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26
제 31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27
제 32 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27
제 33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28
제 34 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28
<b>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b>	<b>28</b>
제 3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28
제 36 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28
제 37 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28
제 38 조 [해지환급금]	29
제 39 조 [보험계약대출]	29
제 40 조 [적립액의 인출]	29
제 41 조 [배당금의 지급]	30
<b>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b>	<b>30</b>
제 42 조 [분쟁의 조정]	30
제 43 조 [관할법원]	30
제 44 조 [소멸시효]	30
제 45 조 [약관의 해석]	30

제 46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30
제 47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30
제 48 조 【개인정보보호】.....	30
제 49 조 【준거법】 .....	30
제 50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	31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32
<별표 2> 재해분류표 .....	35
<별표 3> 장애분류표.....	36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49



































**제 50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간질)

-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 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li> <li>-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방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li> <li>-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li> <li>-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질뚝거림)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걸지 못하는 상태(10%)</li> </ul>
음식물 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li> <li>-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li> <li>- 손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li> </ul>
배변배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li> <li>- 화장실에 가서 변기 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li> <li>-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 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li> <li>-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li> </ul>
목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li> <li>-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li> <li>-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li> </ul>
옷 입고 벗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li> <li>-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 없이는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li> <li>-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li> </ul>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재해장해급여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생존연금, 연금 (제3조 제2호 및 제3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공사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1년 이내 : 공사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38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사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생존연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사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이자는 제 44 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관

전환시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계산하며,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무배당 연금전환특약Ⅲ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55
제 1 조 【목적】.....	55
제 2 조 【용어의 정의】.....	55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	55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55
제 4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55
제 5 조 【보험금의 청구】.....	56
제 6 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56
제 3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57
제 7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57
제 8 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57
제 9 조 【특약의 보장개시】.....	57
제 10 조 【특약의 무효】.....	57
제 11 조 【특약의 보험기간】.....	58
제 4 관 보험료의 납입 .....	58
제 12 조 【특약 보험료의 납입】.....	58
제 5 관 특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58
제 13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58
제 14 조 【해지환급금】.....	58
제 6 관 기타사항 .....	58
제 15 조 【소멸시효】.....	58
제 16 조 【전환전계약 약관의 준용】.....	58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59
<별표 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	61











(주)

1. 「연금지급개시점의 책임준비금」은 연금지급개시나이 이전에 발생한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납입한 이 특약의 일시납 순보험료를 말합니다.
2.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3.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이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8. 상속연금형의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계약해당일부터 생존연금을 지급합니다.
9.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10.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금 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2.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1.75%를 적용합니다.
11. 연금의 지급이 완료되었거나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별표2>

##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6조 제2항 및 제14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생존연금 및 연금 (제3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내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게 된 날) 이후	공시이율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14조 제1항)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1. 생존연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공시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2.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이자는 제15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제 1 조 【목적】.....	67
제 2 조 【용어의 정의】.....	67
제 3 조 【특약의 체결】.....	67
제 4 조 【특약의 내용】.....	67
제 5 조 【특약의 부가조건】.....	67
제 6 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68
제 7 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68
제 8 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68
<별표 1> 재해분류표.....	69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합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가 실제  $n$ 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 년중 이라 칭하고  $n$ 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 제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 제8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 재해분류표

주계약의 <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75
제 1 조 【목적】.....	75
제 2 조 【용어의 정의】.....	75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75
제 3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75
제 3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	75
제 4 조 【적용대상】.....	75
제 5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75
제 6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75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76
제 8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76
제 4 관 기타사항 .....	76
제 9 조 【준용규정】.....	76





2. 보험증권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관 기타사항**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2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삭제